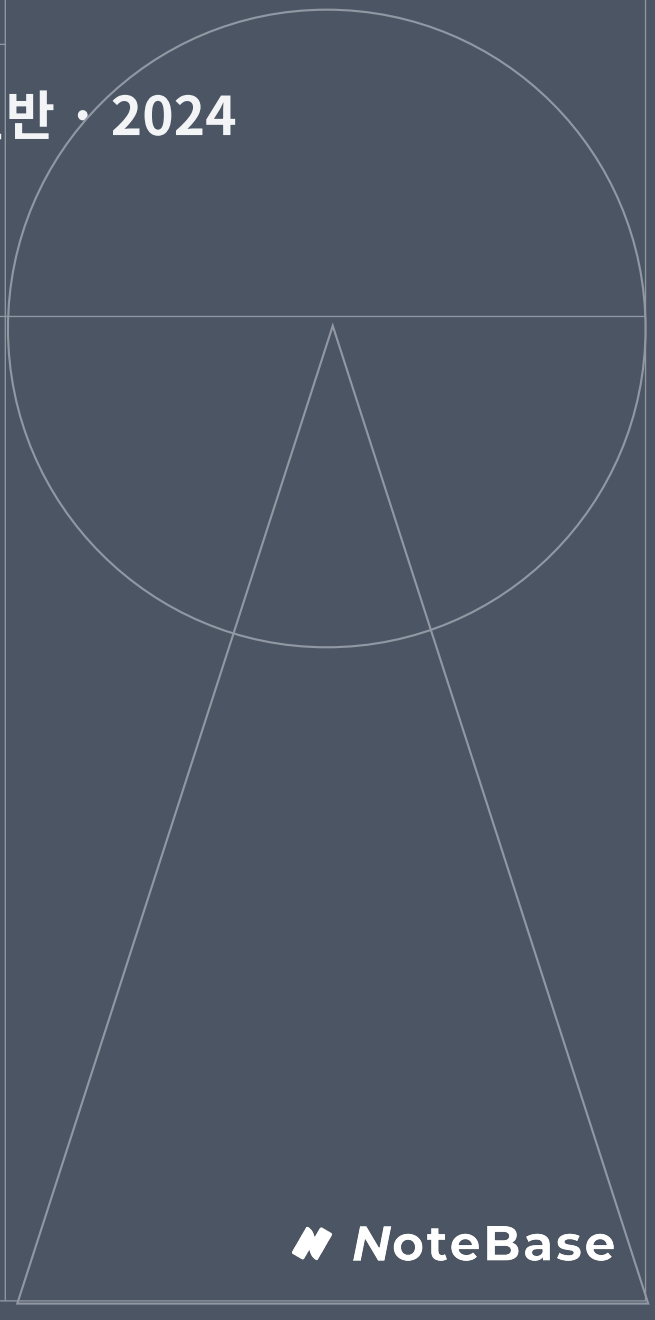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보험일반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보험일반 · 2024

공무원/계리직/9급 · 보험일반 · 2024

1.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그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장성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③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에는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④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특별계정을 통한 기금을 조성한 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또는 배당으로 지급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생명보험 상품을 보험기간, 만기환급 여부, 보장·저축 기능, 투자 실적 반영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신보험은 정해진 만기 없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평생 보장하는 사망보험이다. 정기보험은 미리 정한 보험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 이하인 보장 중심 상품이다. 생사혼합보험은 사망보장과 생존 시 저축 기능을 결합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용하고 그 투자 실적을 보험금 등에 반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다. 이는 정기보험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정기보험은 정해진 보험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평생 보장한다'이다.
② O — 보장성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은 상품이다.
③ O — 생사혼합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기능과 만기까지 생존하면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저축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④ O — 변액보험은 보험료로 조성한 자금을 특별계정에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을 보험금 또는 배당 등에 반영하는 상품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종신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기간 내'라는 표현이 정기보험을 가리킨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인지 일정 기간인지로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에서 먼저 보장기간을 확인한다. 평생 사망보장이면 종신보험, 일정 기간 내 사망보장이면 정기보험이다. 이어 만기환급금, 생존급부, 특별계정과 투자 실적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보장성보험·생사혼합보험·변액보험을 구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종신은 평생, 정기는 기간, 생사혼합은 사망+생존, 변액은 특별계정+투자 실적이다.

NoteBase

2.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이원방식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②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③ 보험자는 적립보험료의 기대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④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데,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보험료 산출 방식의 특징과 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3이원방식: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 기초율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방식: 3이원뿐 아니라 해약, 유지, 판매 규모 등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금흐름과 가격 요소를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정이율: 보험료를 운용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로, 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자가 미리 받아야 할 보험료는 낮아진다.
예정위험률: 보험사고 발생 확률을 미리 추정한 비율로, 사망보험에서는 예정사망률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커져 보험료가 높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3이원방식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② O —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방식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계약의 유입·유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격 요소를 더 폭넓게 반영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이다. 실제로는 예정이율, 즉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미래의 운용수익을 더 크게 예상하므로 현재 필요한 보험료는 내려간다.
④ O — 대수의 법칙을 바탕으로 다수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다. 사망보험에서는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예상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할인율이 높다'는 말을 보험료를 더 많이 붙인다는 뜻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예정이율은 보험료에 가산하는 비율이 아니라 미래 운용수익을 현재가치로 반영하는 할인율이므로, 예정이율과 보험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 영향 방향을 묻는 경우에는 예상 지급액을 키우는 요소와 예상 운용수익을 키우는 요소를 나눈다. 예정위험률이 높아지면 예상 지급액이 커져 보험료가 올라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예상 운용수익이 커져 보험료가 내려간다.

암기 포인트

예정위험률 상승 → 보험료 상승, 예정이율 상승 → 보험료 하락이다.

NoteBase

3. <보기>에서 언더라이팅(청약심사)의 수행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ㄱ. 계약적부 확인
ㄴ. 사고 및 사망조사
ㄷ. 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ㄹ.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ㅁ.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한 선택

① ㄷ → ㄹ → ㅁ → ㄱ → ㄴ
② ㄷ → ㅁ → ㄹ → ㄴ → ㄱ
③ ㄹ → ㄷ → ㅁ → ㄱ → ㄴ
④ ㄹ → ㄷ → ㅁ → ㄴ → 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언더라이팅(청약심사) 과정에서 위험을 선택하고 계약을 확인하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업무의 시간적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ㄷ. 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 보험 모집 단계에서 청약자와 위험에 관한 정보를 처음 확인하는 1차 선택이다.
ㄹ.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 건강진단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 위험을 확인한다.
ㅁ.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한 선택 — 모집 및 건강진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수 여부와 조건을 심사한다.
ㄱ. 계약적부 확인 — 성립한 계약의 청약 내용과 위험 상태가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한다.
ㄴ. 사고 및 사망조사 — 보험사고나 사망이 발생한 뒤 사고 내용과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한다.
왜 이 순서인가: 모집조직과 건강진단에서 확보한 정보가 언더라이팅 심사의 자료가 되고, 계약적부 확인은 계약 성립 뒤에, 사고 및 사망조사는 보험사고 발생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ㄷ → ㄹ → ㅁ → ㄱ → ㄴ은 모집 단계의 1차 선택, 건강위험 확인, 언더라이팅 부서의 종합 심사, 계약 후 적부 확인, 사고 발생 후 조사의 흐름과 일치한다.
② X — 모집조직의 선택 다음에 언더라이팅 부서의 선택을 두고 건강진단을 그 뒤로 미룬 부분과, 사고 및 사망조사를 계약적부 확인보다 앞세운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ㄷ → ㄹ → ㅁ → ㄱ → ㄴ이다.
③ X —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을 모집조직에 의한 선택보다 앞세운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모집 단계의 1차 선택인 ㄷ이 먼저이고, 그다음 ㄹ → ㅁ → ㄱ → ㄴ의 순서이다.
④ X —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을 모집조직에 의한 선택보다 앞세웠고, 사고 및 사망조사를 계약적부 확인보다 앞세운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ㄷ → ㄹ → ㅁ → ㄱ → ㄴ이다.

오답 포인트

건강진단과 언더라이팅 부서 심사의 순서를 혼동하거나, 계약 이후의 두 업무인 계약적부 확인과 사고 및 사망조사의 순서를 바꾸기 쉽다. 계약적부 확인은 계약 성립 후의 확인이고, 사고 및 사망조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의 조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제에서는 각 업무가 언제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배열한다. 청약 접점에서의 모집조직 선택이 출발점이고, 건강진단 자료가 언더라이팅 심사의 입력이 되며, 계약 성립 후에는 계약적부 확인,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및 사망조사가 이어진다.

암기 포인트

모집 → 건강 → 심사 → 계약 확인 → 사고 조사, 즉 ㄷ → ㄹ → ㅁ → ㄱ → ㄴ이다.

NoteBase

4.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모집이 가능하다.
③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
④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와 각 모집종사자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중 모집할 수 없는 임원과 중개·대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다.
중개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이어 주는 것이고, 대리 =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일정한 임원 또는 직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은 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
보험업법 제2조상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대리하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험중개사는 어느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를 대리하는 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옳다.

② X
보험회사의 직원은 모집할 수 있지만, 임원은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는 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과 함께 모집할 수 있는 임원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틀린 표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올바른 표현: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을 제외한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③ O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옳다.

④ O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임직원'이라는 묶음 표현이 함정이다. 직원은 모집할 수 있지만, 임원 중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은 제외된다는 예외를 놓치면 틀리기 쉽다. 또한 보험중개사는 독립적 중개,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한 대리라는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모집 가능자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회사의 일정한 임직원으로 나눈다. 임원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의 제외 여부를 확인하고, 역할에 관해서는 중개사의 '독립적 중개', 대리점의 '보험회사를 위한 대리', 설계사의 '소속 중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모집자는 설계사·대리점·중개사·일정한 보험회사 임직원이고,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은 임원 모집자에서 제외된다. 중개사는 독립, 대리점은 회사 대리, 설계사는 소속 중개이다.

NoteBase

5.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명보험으로서 제3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명보험사가 제3보험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3보험에 부가하는 질병사망 특약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이다.

③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보험업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제3보험의 보상 방식,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금 한도, 제3보험업 허가의제 요건 및 제3보험상품의 법정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제3보험 =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허가의제 =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제3보험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과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이 모두 있으므로, 제3보험 전체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법 제2조는 제3보험상품을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보험업법 제4조의 허가의제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에 관하여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3보험에는 실손형뿐 아니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도 있으므로 실손보상이 제3보험 전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올바른 표현: '제3보험에는 실손보상 방식과 정액보상 방식이 모두 있다.'

② O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할 때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이다.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

③ X
제3보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요건은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틀린 표현: '보험종목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올바른 표현: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O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한다. 제3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제3보험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제3보험 전체의 보상 원칙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③에서는 허가의제 요건인 '전부'를 '일부'로 바꾼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3보험 문제에서는 먼저 보장 대상이 질병·상해·간병인지 확인한 뒤, 보상 방식은 실손형과 정액형을 구별한다. 허가의제 선지는 '보험종목 전부', 질병사망 특약 선지는 '개인당 2억원 이내'라는 문구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제3보험은 질병·상해·간병, 보상은 실손형과 정액형, 허가의제는 종목 전부, 질병사망 특약은 개인당 2억원 이내이다.

NoteBase

6.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실효는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 특정 원인이 발생하여 계약의 효력이 계약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이다.

② 고지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 청약 시에만 이행하고 부활 시에는 이행하지 않는다.

③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보험계약의 실효, 고지의무,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계약의 효력 상실 시점, 의무의 적용 시기, 증권 교부와 계약 성립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실효 = 유효하게 성립한 보험계약이 보험료 연체 등 계약 후의 사유로 효력을 잃는 것이다.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이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핵심 구분

실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무효와 다르며, 계약 후 실효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정지·상실되는 개념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보험증권 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절차이다.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약정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640조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정한다. 또한 상법 제657조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험계약의 실효는 계약 후 특정 사유로 그 이후의 효력이 정지·상실되는 것이므로, 효력이 계약시점까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계약의 효력이 계약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
올바른 표현: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계약 후 특정 사유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다.

② X
고지의무는 최초 계약 청약 때뿐 아니라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때에도 적용된다. 부활은 보험자의 위험선택과 승낙을 다시 거치므로 부활 청약 시 질문받은 중요한 사항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틀린 표현: '계약 청약 시에만 이행하고 부활 시에는 이행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계약 청약 시뿐 아니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때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다'이다.

③ X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상법 제640조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증권 교부가 계약 성립보다 앞서는 성립요건은 아니다.
틀린 표현: '보험가입증서의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올바른 표현: '보험가입증서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며, 그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이다.

④ O
상법 제65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선지는 통지의무의 주체와 시기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실효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혼동하거나, ③의 보험증권이 계약을 증명한다는 점을 성립요건으로 바꾸어 읽기 쉽다. 또한 ②의 '청약 시에만'이라는 제한어를 놓치면 고지의무가 부활 청약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계약 관련 선지는 먼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가', '서류가 성립요건인가 증거인가'를 나누어 판단한다. 보험사고를 안 뒤의 통지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와 통지 주체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인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실효는 사후 효력 상실, 부활에도 고지, 보험증권은 증거, 사고를 알면 지체 없이 통지이다.

NoteBase

7.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체국보험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손해보험을 취급할 수 없다.

② 민영보험은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③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은 보험 종류별 계약보험금 한도액에 제한이 없다.

④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산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취급 범위, 감독기관, 계약보험금 한도 및 보험계약자 보호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우체국보험의 국가 지급책임과 민영보험의 예금자보호를 같은 제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체국보험 = 국가가 운영하고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민영보험 =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계약보험금 한도 = 보험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상한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예금보호한도와 다른 개념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보험 종류를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연금보험으로 정하고 계약보험금 한도 규정을 둔다. 민영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또한 민영보험의 보호대상 보험금 등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만, 우체국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지급책임으로 보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체국보험은 법령상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연금보험을 취급하는 국영보험으로,
변액보험·퇴직연금·손해보험업을 취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연금보험은 보험상품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는 퇴직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다.

② X
보험업법상 민영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과 명령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한다. 감사원은 민영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보험업 감독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까지 포함한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올바른 표현: 민영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③ X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보험 종류별 계약보험금 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 모두 한도 제한이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틀린 표현: 보험 종류별 계약보험금 한도액에 제한이 없다.
올바른 표현: 적어도 우체국보험에는 법령상 보험 종류별 계약보험금 한도 규정이 있다.

④ X
우체국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도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민영보험의 보호대상 보험금 등에 적용되는 현행 예금보호한도도 5천만원이 아니라 보험회사별 1인당 1억원이다.
틀린 표현: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은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산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올바른 표현: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하고, 민영보험의 보호대상 보험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회사별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오답 포인트

④의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와 '5천만원'이 함정이다. 우체국보험의 국가 지급책임과 민영보험의 예금자보호를 구별해야 하며, 민영보험의 현행 보호한도는 1억원이다. 또한 ③의 계약보험금 한도와 금융회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예금보호한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운영주체를 확인한다. 우체국보험이면 국가 지급책임, 민영보험이면 금융위원회 감독·금융감독원 검사와 예금자보호를 연결한다. 다음으로 상품의 가입·계약보험금 한도와 금융회사 부실 시의 예금보호한도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체국보험은 국가 지급책임, 민영보험은 금융위 감독·금감원 검사, 예금보호는 1억원이다.

NoteBase

8.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0년 9월에 우체국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국영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우체국공익재단은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암보험 지원과 같이 보험가입자의 의료복지 증진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④ 공익준비금은 전 회계연도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0.05% 이내, 그린보너스저축보험 전년도 책임준비금의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법적 근거, 우체국공익재단의 설립 시기와 사업 범위, 공익사업 재원의 조성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공익사업은 우체국보험의 공적 역할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복지, 체육·문화, 교육·장학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을 보건·사회복지, 체육·문화, 교육 관련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정하고, 그 재원을 전 회계연도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5% 이내에서 조성하도록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우체국공익재단은 2000년 9월이 아니라 2013년에 설립되었다. 우체국의 사회공헌활동이 2000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사실과 재단 설립 시기를 혼동한 선지이다.
틀린 표현: '2000년 9월에 우체국공익재단을 설립'
올바른 표현: '2013년에 우체국공익재단을 설립'이다.

② O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③ X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대상 공익보험 지원뿐 아니라 보건·사회복지, 체육·문화, 교육·장학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므로 보험가입자의 의료복지 증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보험가입자의 의료복지 증진에 한하여'
올바른 표현: '사회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보건·사회복지, 체육·문화, 교육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발굴·지원한다'이다.

④ X
시행규칙상 공익사업 재원은 전 회계연도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5% 이내에서 조성한다.
이익잉여금의 0.05% 이내와 그린보너스저축보험 전년도 책임준비금의 5% 이내를 합산한다는 기준이 아니다.
틀린 표현: '이익잉여금의 0.05% 이내, 그린보너스저축보험 전년도 책임준비금의 5% 이내'
올바른 표현: '전 회계연도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5% 이내'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사회공헌활동이 본격화된 2000년과 재단이 설립된 2013년을 바꾸어 놓았고, ④는 법정 재원 기준인 이익잉여금의 5%를 0.05%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변형하였다. 연도와 비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문항에서는 먼저 법률의 위임 대상이 '사업 범위와 재원 조성'인지 확인하고, 이어 시행규칙의 사업 분야와 '전 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의 5% 이내'라는 재원 기준을 대조한다. 재단 설립 시기는 2013년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공익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재단은 2013년, 재원은 전 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의 5% 이내이다.

NoteBase

9. 금융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의 종류 중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 ()리스크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이다.
(나) ()리스크는 주가, 이자율,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이다.
(다) ()리스크는 자금의 조달, 운영기간의 불일치, 예기치 않은 자금 유출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할 리스크이다.

	(가)	(나)	(다)
①	보험	시장	유동성
②	보험	금리	신용
③	운영	금리	유동성
④	운영	시장	신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보험 리스크,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를 손실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험 리스크: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 등이 예상보다 불리하게 변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키워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이다.
시장 리스크: 주가·이자율·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키워드는 '시장가격 변동'이다.
유동성 리스크: 자금의 조달과 운용 만기가 맞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금 유출이 생겨 지급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다. 키워드는 '지급불능'이다.
운영 리스크는 내부 절차·인력·시스템의 부적절함이나 외부 사건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고, 신용 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는 보험 리스크, (나)의 주가·이자율·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는 시장 리스크, (다)의 만기 불일치와 예상 밖 자금 유출에 따른 지급불능은 유동성 리스크에 해당한다.
② X — (나)를 '금리'로, (다)를 '신용'으로 채운 부분이 틀렸다. (나)는 이자율뿐 아니라 주가와 환율 등 시장가격 전반의 변동을 다루므로 시장 리스크이고, (다)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자금 부족에 따른 지급불능을 다루므로 유동성 리스크이다. 올바른 배열은 '보험－시장－유동성'이다.
③ X — (가)를 '운영'으로, (나)를 '금리'로 채운 부분이 틀렸다. (가)는 내부 절차나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이므로 보험 리스크이고, (나)는 금리 변동만이 아니라 주가·환율 변동까지 포함하므로 시장 리스크이다. 올바른 배열은 '보험－시장－유동성'이다.
④ X — (가)를 '운영'으로, (다)를 '신용'으로 채운 부분이 틀렸다. (가)는 보험계약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 리스크이고, (다)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자금 만기 불일치와 예상 밖 유출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이다. 올바른 배열은 '보험－시장－유동성'이다.

오답 포인트

(나)에 이자율이 제시되어 금리 리스크만 떠올리거나, (다)의 '지급불능'을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오해하여 신용 리스크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나)는 주가·이자율·환율을 함께 제시한 시장 리스크이고, (다)는 금융회사 자신의 자금 부족 문제인 유동성 리스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실의 직접 원인을 먼저 찾는다. 손해율·보험금 지급의 예상 초과는 보험, 주가·금리·환율 등 가격 변동은 시장, 자금의 만기 불일치·갑작스러운 유출·지급 곤란은 유동성,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은 신용, 내부 절차·인력·시스템의 실패는 운영 리스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해율은 보험, 가격 변동은 시장, 돈이 제때 없으면 유동성 리스크이다.

NoteBase

10. <보기>에서 우체국보험 모집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 보 기 >

ㄱ. 금융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하인 직원은 보험모집을 제한한다.

ㄴ. 직원 중 보험모집을 희망하는 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보험모집 희망자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우체국장이 실시하는 보험 관련 집합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모집 자격이 부여된다.

ㄷ. 우체국FC(Financial Consultant)로 선정될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국내거주권(F-2) 또는 동반비자(F-3), 재외동포(F-4), 영주자격(F-5), 결혼이민(F-6)이 인정된 자이다.

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우체국FC 등록이 제한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 모집자의 자격요건과 모집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직원의 교육요건, 외국인 우체국FC의 체류자격, 형사처벌에 따른 등록 제한기간을 정확히 구별하여 옳은 설명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체국FC = 우체국과 위촉계약을 맺고 우체국보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개인이다.
보험모집 제한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모집자 기준에 따르면 ㄱ, ㄴ, 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은 총 3개이다.
ㄱ: 신규임용일 또는 금융업무 미취급 관서에서의 전입일부터 3년 이하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모집이 제한되지만, 금융업무 담당자는 제외된다.
ㄴ: 보험모집 희망자 사이버교육과 보험 관련 집합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직원의 보험모집 자격요건 중 하나이다.
ㄷ: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체류자격은 F-2, F-4, F-5, F-6이며 F-3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우체국FC로 등록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설명은 1개가 아니라 ㄱ, ㄴ, ㄹ의 3개이다.
틀린 표현: 1개
올바른 표현: 3개

② X
옳은 설명은 2개가 아니라 ㄱ, ㄴ, ㄹ의 3개이다. ㄷ의 동반비자(F-3)는 인정되는 체류자격이 아니다.
틀린 표현: 2개
올바른 표현: 3개

③ O
ㄱ, ㄴ, ㄹ이 옳고 ㄷ만 틀리므로 옳은 설명은 총 3개이다.

④ X
네 설명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다. ㄷ은 인정되는 체류자격에 동반비자(F-3)를 잘못 포함하였다.
틀린 표현: 4개
올바른 표현: 3개

오답 포인트

ㄷ의 F-3을 ‘국내 체류가 가능한 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체국FC 자격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기준에서 열거된 체류자격은 F-2, F-4, F-5, F-6이고 F-3은 제외된다. 또한 ㄹ의 제한기간은 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수형 문항은 각 문장을 먼저 독립적으로 O/X 판정한 뒤 O의 개수만 센다. 이 문제에서는 '직원'의 교육·모집 제한과 '우체국FC'의 외국인 체류자격·등록 제한을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외국인 우체국FC 체류자격은 F-2·F-4·F-5·F-6이고 F-3은 제외된다. 벌금형 관련 등록 제한은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다.

NoteBase

11.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

② 대상 보험료는 당월분 보험료, 1·2연체 보험료, 선납보험료이다.

③ 수금 방법이 자동이체인 계약은 실시간이체 출금계좌와 자동이체 약정계좌가 달라도 자동이체 할인이 적용된다.

④ 고객 요청 시 즉시 보험계약자의 계좌 또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의 이용 가능한 계약 상태, 대상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 적용 조건과 납부 처리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 계좌 또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서 보험료를 즉시 출금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정상 계약에 이용할 수 있고, 대상 보험료는 당월분 보험료·1연체 보험료·선납보험료이다. 자동이체 계약은 실시간이체 출금계좌와 기존 자동이체 약정계좌가 달라도 자동이체 할인이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는 계약 상태가 정상인 계약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X — '1·2연체 보험료'라는 표현이 틀렸다. 대상 보험료는 당월분 보험료, 1연체 보험료, 선납보험료이며, 2연체 보험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보험료는 당월분 보험료, 1연체 보험료, 선납보험료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보험료 수금 방법이 자동이체인 계약은 실시간이체 출금계좌와 자동이체 약정계좌가 서로 달라도 자동이체 할인이 적용되므로 옳다.

④ O — 고객이 요청하면 보험계약자 계좌 또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서 현금을 즉시 인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1연체’와 ‘2연체’를 한데 묶어 모두 대상인 것처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1연체 보험료까지만 대상이며 2연체 보험료는 제외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 문항에서는 먼저 계약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대상 보험료를 ‘당월분·1연체·선납’으로 구분한다. 이어 자동이체 계좌와 실시간이체 계좌가 달라도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요청 즉시 출금되는 방식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상 계약, 당월분·1연체·선납, 계좌가 달라도 자동이체 할인, 요청 즉시 출금이다.

NoteBase

12. <보기>에서 우체국보험 보험료의 할인 및 납입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보험료 납입 면제 시 선납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서 제외한 후 지급한다.

ㄴ.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 월의 계약응당일 이후일 경우, 당월분 보험료는 납입해야 한다.

ㄷ. 실손의료비보험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상실 시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ㄹ. 금리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포함한 보험계약은 향후의 보험료를 3개월분(2021.9.12. 이전 계약은 1개월분) 이상 미리 납입하는 경우, 선납할인이 적용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납입면제 시 보험료 정산, 의료수급권자 할인 및 선납할인의 적용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지급액에 더하는 금액과 빼는 금액,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 시점, 할인 종료 시점 및 선납할인의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계약응당일 = 보험계약 후 매월 계약일과 같은 날짜로서 해당 월 보험료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일이다.
선납보험료 = 아직 납입기가 오지 않은 장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한 금액이다.
미경과 보험료 = 납입한 보험료 중 아직 보장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보험료 납입면제 계약에 선납보험료와 미경과 보험료가 있으면 해당 보험금에 합산하고, 미납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이 있으면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납입면제 사유가 해당 월의 계약응당일 이후에 발생하면 당월분 보험료는 납입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 날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한다. 선납할인은 원칙적으로 장래 보험료 3개월분 이상을 미리 납입할 때 적용되지만, 2021년 9월 12일 이전 계약은 1개월분 이상이 기준이고 금리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계약응당일 이후 납입한 차회분 보험료가 선납할인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서 제외'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선납보험료와 미경과 보험료를 해당 보험금에 합산하고, 미납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은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ㄷ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옳다.

② X

ㄱ과 ㄹ이 모두 틀린 조합이다. ㄱ은 선납보험료와 미경과 보험료를 보험금에 합산하는 것이 맞다. ㄹ의 '금리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포함한 보험계약은 3개월분 이상 선납하면 선납할인이 적용된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3개월분 기준에 예외가 있으며, 2021년 9월 12일 이전 계약은 1개월분 이상이 기준이고 금리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계약응당일 이후 납입한 차회분 보험료가 선납할인에서 제외된다.

③ O

ㄴ과 ㄷ이 모두 옳다. 납입면제 사유가 해당 월의 계약응당일 이후에 발생하면 당월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한 실손의료비보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면 자격 상실일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한다.

④ X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ㄹ의 포괄적인 '3개월분 이상이면 적용'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2021년 9월 12일 이전 계약은 1개월분 이상이 기준이며, 금리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계약응당일 이후 납입한 차회분 보험료가 선납할인에서 제외된다.

오답 포인트

ㄱ은 '받을 돈은 합산, 갚을 돈은 공제'라는 방향을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ㄹ은 선납할인의 일반적인 3개월분 기준만 제시하고, 2021년 9월 12일 이전 계약의 1개월분 기준과 금리변동형·(개인)연금저축 상품의 차회분 적용 제외를 누락한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납입면제 정산은 계약자에게 돌려줄 선납·미경과 보험료는 보험금에 더하고, 미납보험료·대출원리금은 보험금에서 뺀다고 판단한다. 날짜가 나오면 계약응당일 전후와 자격 상실일을 확인하고, 선납할인은 최소 선납 개월 수와 상품별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선납·미경과는 더하고, 미납·대출은 뺀다. 응당일 이후 면제는 당월 납입, 수급권 상실은 그 날부터 정상 보험료, 선납할인은 3개월 원칙·구계약 1개월·변동형과 연금저축 차회분 예외이다.

NoteBase

13.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험료의 50%를 납입한다.

②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는 임신 24주 이내 임신부가 가입 가능하다.

③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의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다.

④ 보험기간 중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의 보험료 납입 주체, 임신질환진단특약의 가입 시기와 보험기간, 해약환급금의 귀속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실제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보장 책임이 실제로 계속되는 기간이다.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등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돌려주는 금액이다.

핵심 구분

이 보험의 보험료는 공동 보험계약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액 납입한다. 임신질환진단특약은 임신 22주 이내 산모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특약은 보험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체결하지만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 시까지이며 최대 10개월이다. 계약의 해지·무효·취소·철회 등으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이나 보험료 반환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은 제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료의 50%가 아니라 전액을 납입한다. 틀린 표현: '보험료의 50%' → 올바른 표현: '보험료의 전부'이다.

② X —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는 임신 24주 이내가 아니라 임신 22주 이내 산모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임신 24주 이내' → 올바른 표현: '임신 22주 이내'이다.

③ X — 10개월은 특약 체결 시 보험료 계산의 기준 기간이다.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 시까지이며 최대 10개월이다. 틀린 표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올바른 표현: '계약일부터 분만 시까지(최대 10개월)'이다.

④ O —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무효·취소·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반환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10개월을 기준으로 체결한다'는 표현을 '실제로 반드시 10개월간 보장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기준 보험기간과 실제 보험기간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공익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료를 일부만 지원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험료 전액을 납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상품은 '보험료 전액 납입', '임신 22주 이내', '실제 보험기간은 분만 시까지(최대 10개월)', '해약환급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의 네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액·22주·분만 시까지·환급금은 장관 귀속으로 연결한다.

NoteBase

14.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주계약에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이 있다.
○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80세, 90세, 100세 만기이다.
○ '국민체력100' 체력 인증 시 보험료 지원 혜택이 있다.
○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다.

① 무배당 우체국통합건강보험 2109
②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
③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203
④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402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주계약의 환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지원 혜택, 갱신 여부를 종합하여 해당 우체국보험 상품명과 상품코드를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203은 주계약에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이 있고, 보험기간이 80세·90세·100세 만기이며, '국민체력100' 체력 인증 시 보험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비갱신형 상품이다. 따라서 보기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무배당 우체국통합건강보험 2109'라는 상품명과 코드는 보기의 네 특징이 함께 제시된 상품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상품명·코드이며, 올바르게는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203'이다.
② X —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는 보기에서 설명한 80세·90세·100세 만기, 국민체력100 연계 혜택, 비갱신형 등의 조건 묶음에 해당하는 상품명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상품명·코드이며, 올바르게는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203'이다.
③ O —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203'은 해약환급금 50%지급형, 80세·90세·100세 만기, 국민체력100 인증 시 보험료 지원, 비갱신형이라는 보기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④ X —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402'라는 상품명과 코드는 보기의 특징 묶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보기는 80세·90세·100세 만기인 New100세건강보험을 설명한다. 틀린 부분은 상품명·코드이며, 올바르게는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203'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품명에 '건강보험'이 들어간다는 공통점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100세 만기' 하나만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세 가지 만기, 국민체력100 연계 혜택, 비갱신형이라는 네 단서를 모두 묶어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식별 문제에서는 보기의 특징을 환급 구조·보험기간·부가 혜택·갱신 여부로 나눈 뒤, 모든 조건이 동시에 일치하는 상품명과 코드를 선택한다. 일부 조건만 비슷한 상품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New100세건강보험 2203은 50% 환급형·80/90/100세 만기·국민체력100·비갱신형으로 연결한다.

NoteBase

15.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 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2109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천만 원에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를 할인하여 준다.

(나)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2109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한다.

(다)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년 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한다.

	(가)	(나)	(다)
①	2	10	15
②	3	15	10
③	2	15	10
④	3	10	1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 상품별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율과 간병자금 지급기간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4천만 원이면 주계약 보험료의 3%를 할인한다.
(나)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으면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을 최대 15년 동안 지급한다.
(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으면 장기요양진단간병자금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따라서 빈칸의 조합은 (3, 15, 1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 10, 15)는 세 수치가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가) 3%, (나) 15년, (다) 10년이다.
② O — (3, 15, 10)은 (가)의 할인율 3%, (나)의 지급기간 15년, (다)의 지급기간 10년과 모두 일치한다.
③ X — (2, 15, 10)에서 (나) 15년과 (다) 10년은 맞지만, (가)의 '2%'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천만 원에 3%를 할인한다.
④ X — (3, 10, 15)에서 (가) 3%는 맞지만, (나)와 (다)의 지급기간을 서로 바꾸었다. 올바르게는 (나) 15년, (다) 10년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나)의 중증치매 간병자금과 (다)의 장기요양 간병자금의 지급기간을 뒤바꾸는 것이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의 할인율 2%와 정확히 4천만 원 가입 시 할인율 3%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입금액 구간의 경계를 확인하고, 치매와 장기요양의 지급기간을 각각 대응시킨다. 4천만 원은 3%, 중증치매는 15년, 장기요양 1~2등급은 10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4천만 원은 3%, 치매는 15년, 장기요양은 10년이다.

NoteBase

16. 우체국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203 2종(든든형)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②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는 건강 관련 3가지의 간편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③ 무배당 win-win단체플랜보험 2109는 피보험자가 3인 이상 단체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④ 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2109는 3대 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보험 상품별 핵심 보장, 간편고지 방식, 단체보험의 가입 인원과 보험료 할인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녀보험은 성장기 위험을 폭넓게 장기 보장하는 상품이고, 간편가입건강보험은 유병력자 등이 간소화된 건강고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체플랜보험은 일정 인원 이상의 피보험단체를 전제로 인원 구간별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며, 든든한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중 일부를 3대 질병 진단 시 앞당겨 지급하는 구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203의 2종(든든형)은 출생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할 수 있는 어린이 종합보험이므로 옳다.

② O —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는 건강 관련 3가지 간편고지로 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상품이므로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피보험자가 3인 이상'이다.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단체가 가입 대상이며,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인원 구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④ O — 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2109는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의 3대 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진단보험금으로 선지급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단체'라는 말만 보고 소수 인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이 상품의 최소 기준은 3인이 아니라 5인이며, 할인도 5인부터 적용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별 대표 숫자를 먼저 대응한다. 자녀지킴이보험은 최대 100세, 간편가입건강보험은 3가지 간편고지, win-win단체플랜보험은 최소 5인, 든든한종신보험은 3대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녀 100세, 간편고지 3가지, 단체 5인, 3대 질병 선지급이다.

NoteBase

17. <보기>에서 우체국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 보 기 >

ㄱ.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109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ㄴ.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을 부가할 수 있다.
ㄷ.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는 주계약의 경우, 질병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ㄹ.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하여 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보험 상품별 세제 혜택, 부가 가능한 특약, 실손보험의 주계약 가입 형태,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깨동무보험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은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는 특약이므로 저축성보험에는 부가할 수 없다.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의 주계약은 종합형 가입이 원칙이고,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부터 고액계약 할인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109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므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을 부가할 수 있다'이다. 이 특약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장성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저축성보험인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에는 부가할 수 없다.
③ X — 틀린 표현은 '주계약의 경우, 질병형만 가입이 가능하다'이다. 실제로는 주계약 종합형 가입이 원칙이며, 중복 가입이나 병력 등으로 종합형 가입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상해형 또는 질병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O —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ㄹ의 2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장애인’이라는 말만 보고 모든 보험에 전환특약을 붙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③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질병형을 원칙처럼 제시한다. 특약의 대상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 가입 형태가 원칙인지 예외인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별 설명은 세제 혜택의 대상, 특약의 적용 대상, 주계약 가입 원칙, 할인 기준 금액을 차례로 확인한다. ‘만’, ‘경우’, ‘이상’ 같은 한정 표현이 실제 상품 조건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어깨동무는 장애인 세액공제, 그린보너스플러스는 전환특약 불가, 급여실손은 종합형 원칙, 와이드건강은 2천만원부터 할인이다.

NoteBase

18. 우체국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2109는 주계약 상품유형에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

②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2109는 납입기간이 일시납으로 보험기간은 3년부터이다.

③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은 만기 유지 시 전체 보험기간 동안 보너스금리를 제공한다.

④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저축보험 2109는 가입 1개월 유지 후 언제든지 해약해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저축성보험 상품별 상품유형, 보험기간, 보너스금리 적용기간, 해약환급금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워적립보험 2109는 1종(만기목돈형)과 2종(이자지급형)으로 구분한다. 알찬전환특약 2109는 일시납이며 보험기간을 2년부터 선택할 수 있다.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의 보너스금리는 만기 유지 조건 아래 계약일부터 최초 1년간 추가 적용한다. 우체국온라인저축보험 2109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이 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일반형과 비과세종합저축'이다.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2109의 주계약 상품유형은 1종(만기목돈형)과 2종(이자지급형)이다.

② X
납입기간이 일시납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틀린 표현은 '보험기간은 3년부터'이다.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2109의 보험기간은 2년부터이며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만기 중에서 선택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전체 보험기간 동안'이다.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의 보너스금리는 만기 유지 시 계약일부터 최초 1년간 추가 제공되며, 전체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저축보험 2109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이므로, 그 이후 해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옳다.

오답 포인트

상품마다 비슷한 저축 기능이 있어 다른 상품의 분류와 기간을 바꾸어 붙이기 쉽다. 특히 ①은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의 일반형·비과세종합저축 구분을 파워적립보험에 옮겼고, ③은 '최초 1년간'을 '전체 보험기간 동안'으로 확대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마다 네 항목을 따로 확인한다. 파워적립보험은 1종·2종, 알찬전환특약은 일시납·최저 2년,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만기 유지·최초 1년 보너스금리, 온라인저축보험은 1개월 후 환급률 100% 이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파워는 1종·2종, 알찬은 2년부터, 그린은 최초 1년, 온라인은 1개월 후 100%이다.

NoteBase

19. 우체국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는 3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②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는 납입주기를 월납과 일시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1세'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④ 무배당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2109는 납입주기가 월납인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연금보험상품별 연금개시나이,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추가납입 가능 시기와 적용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는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으로 2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는 기본보험료를 월납하며, 추가납입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까지 가능하다.
무배당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2109는 일시납계약과 월납계약을 두되, 추가납입보험료는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에만 납입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의 연금개시나이는 20세부터 선택할 수 있으므로 '30세부터'가 틀렸다.
틀린 표현: 3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2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② X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의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는 월납이므로 일시납을 선택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납입주기를 월납과 일시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월납이다.

③ X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의 추가납입은 계약일 이후 1년이 아니라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종료 시점인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은 맞다.
틀린 표현: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올바른 표현: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④ O
무배당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2109는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상품명이 비슷해도 납입주기와 추가납입 조건은 서로 다르다. 특히 ③의 '1년'과 실제 기준인 '1개월', ④의 '월납계약에 한함'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상품을 '연금개시나이-기본보험료 납입주기-추가납입 시작 시점-추가납입 적용 계약'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숫자 선지는 20세와 30세, 1개월과 1년을 먼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어깨동무는 20세부터, 온라인연금저축은 월납·1개월 후 추가납입, 이전형은 월납계약만 추가납입 가능이다.

NoteBase

20. 우체국연금보험 23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나이는 0세부터 '연금개시나이−5세'까지이다.

② 연금지급 형태에는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이 있다.

③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월납 계약으로 기본보험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연금보험 2312의 가입나이, 연금지급형태, 세제 혜택, 고액계약 적립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이 상품의 연금지급형태에 더블연금형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연금지급형태는 연금을 어떤 방식과 기간으로 받는지를 정한 유형이다. 고액계약 적립금액은 월납 기본보험료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추가 적립하는 금액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연금보험 2312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이다. 종신연금형의 세부유형은 정액형과 조기집중연금형이며, 더블연금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요약서·약관은 가입나이를 0세부터 '연금개시나이-5세'까지로 정하고,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에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추가하도록 정한다.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세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입나이는 0세부터 '연금개시나이-5세'까지이므로 옳다.

② X — 우체국연금보험 2312의 연금지급형태에는 더블연금형이 없다. 틀린 표현: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 올바른 표현: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이며, 종신연금형의 세부유형으로 정액형과 조기집중연금형이 있다.

③ O — 관련 세법이 정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④ O — 월납계약은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납입기간별 비율로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추가 적립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품의 다른 개정형이나 유사 연금보험에서 사용하는 '더블연금형'을 우체국연금보험 2312에도 있는 것으로 혼동하기 쉽다. 이 상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연금 선택지는 종신연금형의 정액형·조기집중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을 가리키며, 더블연금형을 뜻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 뒤의 개정 코드까지 확인한 뒤, 연금지급형태와 그 세부유형을 나누어 판단한다. 세제 혜택 문장은 무조건 비과세인지가 아니라 '관련 세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고액계약 적립은 월납 여부·30만원 초과분·납입기간별 비율을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2312는 종신·확정, 더블은 제외이다. 월납 30만원 초과분은 고액계약 적립 대상이고, 비과세는 세법상 요건 충족이 전제이다.

NoteBase